

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3차 본 회의(2016.9.7.)

#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

## 산 업 건 설 위 원 회

# - 목 차 -

의안번호	건 명	페이지
2016-52	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·관리 조례안	1
2016-53	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
2016-54	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6

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·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8. 22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: 2016. 8. 2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9. 5.

## 2. 제정이유

- 백두대간의 문화·역사·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에 관한 규정(안 제1조)

-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태교육장 설치·운영

나. 위치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
-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위치는 고제면 빼재로 2325

다.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- 백두대간의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, 발굴·보존·전시 등의 역할
- 라. 개관 및 휴관, 관람 시간에 관한 규정(안 제4조·제5조)

- 휴 관 일: 월요일, 1월 1일, 설·추석 연휴,  
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날

- 관람시간: 오전 10시 ~ 오후 5시

마.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(안 제6조·제8조, 별표1·2·3)

- 입장료

(단위: 원)

어 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
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
2,000	1,000	1,000	500	500	200

- 무료입장 대상: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공무수행자, 거창군민, 국민 등

○ 시설 사용료

- 숙박시설: 성수기 70,000원, 비수기 50,000원
- 세미나실: 4시간 50,000원, 8시간 100,000원, 1일 150,000원

-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: 국민·외교사절단, 공무 수행자

**바.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**

- 인화물질 및 위험물,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등은 입장 제한
-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은 하여서는 아니 됨.
- 행위 제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.

**사. 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,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**

(안 제9조·제10조, 별표 4)

- 시설 사용 예약자는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
-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취소시기에 따라 반환(20퍼센트~전액)
- 시설의 긴급 개선·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용 제한

**아. 편의시설 설치·운영, 위탁 운영,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한 규정**

(안 제11조·제12조·제13조)

- 생태교육장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생태교육장을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-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하여는 「거창박물관조례」 준용

## **4. 전문위원 검토요지**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에 따라 “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8. 22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8. 2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9. 5.

## 2. 개정이유

-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, 건설기계 사업자 및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,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사용 규정 신설(안 제3조제8항, 제4조제2항)
  - 군수와 지역건설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,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사용 노력,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 근로자 등을 배제하지 아니함.
- 나. 위원회 성별균형 규정 신설(안 제8조제1항)
  - 특별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재검토행 규제일몰제 도입(안 제13조)
  - 경쟁 제한적 차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.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, 건설기계사업자 및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8. 22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8. 2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9. 5.

## 2. 개정이유

-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대료 반환규정을 개선하여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임대료 반환이 재량이 아닌 당연히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선 (안 제12조)
  - (현행) 반환할 수 있다. → (개정) 반환한다.
- 나.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(안 제13조제2항, 제14조제4항)
  -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삭제
- 다. 위원회 성별균형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(안 제19조제1항)
  - (현행) 특별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→(개정) 특별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법령체계상 맞지 않은 내용 삭제(안 제23조)
  -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

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대료 반환규정을 재량이 아닌 당연히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,
- 나. 위원회의 성별균형 규정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